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 안 이 유

도조직개편에 따라 한시사업소(공영개발사업단, 과학 산업단지건설기획단) 폐지, 교육기관(공무원교육원, 도민교육원) 통폐합, 충북개발사업소 신설, 본청 기능 보강(문화관광국, 인삼특작과)에 따른 정원조정

□ 주 요 골 자

< 정원조정 내용 >

- 총감축 정원 78명
(도분청 △ 20, 의회△ 6, 직속기관 증 22, 사업소 △ 71, 출장소 △ 3
· 23명은 순감축 조치 - 기중원 승인받은 재난관리요원 23명과 상계조정 (도분청20, 출장소3)
· 본청 40명과 사업소 15명은 유보정원 관리

- 도 분 청 : 937명 ⇒ 977명(유보정원 40명)
- 의회사무처 : 65명 ⇒ 59명(감 6명)
- 직속기관 : 981명 ⇒ 1,003명(도민교육원정원이관22명)
※ 공무원교육원 49명 → 71명(증 22명)
- 사 업 소 : 352명 ⇒ 296명(감 56명)

□ 근 거 법 령

-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제1항

□ 따 로 붙 임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3. 참고자료(근거법령) 1부 끝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

1. 본 청 : 977명
2. 의회사무처 : 59명
3. 직속 기관 : 1,003명
4. 사업소 : 296명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감축정원에 따른 경과조치)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(한시정원) 사업소 정원중 3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④ (다른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(사무직원의 정수) 중 "65명"을 "59명"으로 한다.